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재배치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제처·국가보훈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과와 기획조정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2명(8급 2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처 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제6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직무복귀”를 “재활 및 직무복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산심사과”를 “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7호 후단 중 “지도”를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식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재산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관리
3.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관리
4. 공직자(제11조제6항제1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한다) 및 결과의 처리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7. 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정보·편의 제공 등 재산 성실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산심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필요한 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기법의 개발 및 확산
5.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등록사항 심사 수임기관 감독·감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후단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88”을 “400”로 하고, 일반직 계 “387”을 “399”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0”을 “73”으로, 행정주사 “19”를 “2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63”을 “65”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8”을 “22”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4”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88”을 “400”로 하고, 일반직 계 “387”을 “399”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5”를 “78”로, 행정주사 “19”를 “2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8”을 “60”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9”를 “23”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4”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6”을 “155”로 하고, 일반직 계 “155”를 “154”로 하며, 행정주사 “22”를 “21”로, 행정서기 “8”을 “7”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4”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 및 “통신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55”를 “154”로 하고, 일반직 계 “154”를 “153”으로 하며, 행정주사 “22”를 “21”로, 행정서기 “7”을 “6”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4”로 하고, “기계

운영서기 1” 및 “통신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처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 ② (생략)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 및 간병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u>	<삭제>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u>직무복귀</u>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4. ----- -- <u>재할 및 직무복귀</u> ----- -----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윤리복무국) ① (생략)	제11조(윤리복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윤리	③ -----

정책과·재산심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지원

<신설>

⑤ 재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의 처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
지도·점검 -----

8. 주식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산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관리

3.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관리

4. 공직자(제11조제6항제1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한다) 및 결과의 처

5. <u>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u> <신 설>	리 5. <u>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u> 7. <u>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u> 8. <u>정보·편의 제공 등 재산 성실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u> ⑥ <u>재산심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부동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의 처리</u> 2. <u>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u> 3. <u>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필요한 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u> 4. <u>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기법의 개발 및 확산</u> 5. <u>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재산등록사항 심사 수입기관 감독·감사에 관한 사항</u>	⑥ <u>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 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⑦ ----- -----.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88</u>	<u>400</u>	+12
·	·	·	
·	·	·	
일반직 계	<u>387</u>	<u>399</u>	+1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u>70</u>	<u>73</u>	+3
·	·	·	
·	·	·	
행정주사	<u>19</u>	<u>20</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u>63</u>	<u>65</u>	+2

주사 또는 전산주사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8</u>	<u>22</u>	+4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u>3</u>	<u>4</u>	+1
·	·	·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 공업전문관·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u>9</u>	<u>10</u>	+1
·	·	·	
·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88</u>	<u>400</u>	+12
·	·	·	
·	·	·	
일반직 계	<u>387</u>	<u>399</u>	+1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u>75</u>	<u>78</u>	+3
·	·	·	
·	·	·	
행정주사	<u>19</u>	<u>20</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58</u>	<u>60</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9</u>	<u>23</u>	+4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u>3</u>	<u>4</u>	+1
·	·	·	
운전서기보	<u>2</u>	<u>1</u>	-1
·	·	·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u>9</u>	<u>10</u>	+1
·	·	·	
·	·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6</u>	<u>155</u>	-1
·	·	·	
·	·	·	
일반직 계	<u>155</u>	<u>154</u>	-1
·	·	·	
·	·	·	
행정주사	<u>22</u>	<u>21</u>	-1
·	·	·	
·	·	·	
행정서기	<u>8</u>	<u>7</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u>1</u>	<u>4</u>	+3
·	·	·	
기계운영서기	<u>1</u>	<삭 제>	-1
통신운영서기	<u>1</u>	<삭 제>	-1
·	·	·	
·	·	·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5</u>	<u>154</u>	-1
·	·	·	
·	·	·	
일반직 계	<u>154</u>	<u>153</u>	-1
·	·	·	
·	·	·	
행정주사	<u>22</u>	<u>21</u>	-1
·	·	·	
·	·	·	
행정서기	<u>7</u>	<u>6</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u>1</u>	<u>4</u>	+3
·	·	·	
기계운영서기	<u>1</u>	<삭 제>	-1
통신운영서기	<u>1</u>	<삭 제>	-1
·	·	·	
·	·	·	